

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381

발의년월일 : 2020년 6월 18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되, 상위법 저촉 소지에 따라 흡연구역 설치 금지장소를 일부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흡연구역 설치 금지장소를 수정함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장소와 제8호의 장소에는”를 “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”으로 한다.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장소”를 “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,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<u>장소</u>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장소 <u>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</u> <u>에는-----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